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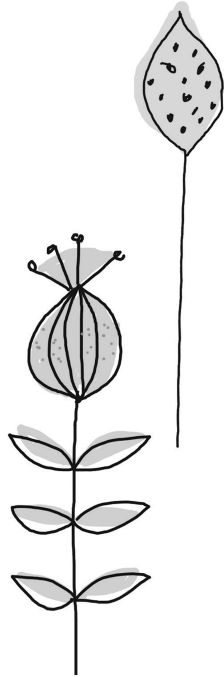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정 안에 갇혀 있던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중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재발을 막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폭력성행 교정처분인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1997년 이래 20회 이상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법 집행과
피해자의 안전 도모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맞는 지금,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라는 주제로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목 차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조사 결과	7
---------------------------------------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주 제 발 표 |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43
------------------------	----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토 론 발 표 |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토론문	69
------------------------------	----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현장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과제	89
--	----

우 철 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토론문	99
------------------------------	----

유 향 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형사 사법 체계에서 치료명령 제도 - 가정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105
--	-----

이 계 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천참사랑병원 연구원장, 킬리안정서행동 연구소장
인천가정법원 상근진단전문가, 보호관찰학회이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토론문	111
------------------------------	-----

고 경 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조사 결과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목 차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11
제 1 절 연구대상	11
제 2 절 연구방법	11
제 3 장 연구결과	4
제 1 절 2016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분석	4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9
3. 행위자의 폭력 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11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14
제 2 절 피해자 사후조사 결과	20
1.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
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22
3. 상담위탁 보호처분시 및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시 행위자와의 관계	22
4.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23
5.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24
6.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피해자의 안전도 점검	27
제 4 장 결론 및 제언	2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 안에 갇혀 있던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등 입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그 폭력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지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재발을 막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폭력성행 교정처분인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1997년 이래 20회 이상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위자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제1조 목적조항의 근본취지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2017년 6월 현재까지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1,469명의 행위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행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된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등 분석을 통하여 법적 제재와 성행교정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 사건 당시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등 피해자 사후조사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용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가정폭력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2016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안전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등을 살펴본다.

둘째, 피해자 사후조사를 통해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안전도 등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적 차원의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개입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6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81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분석에서는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 상담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행위자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안전도 등을 살펴보았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역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6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 및 검찰로부터의 상담위탁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피해자 총 181명 중 행위자의 불성실로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후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등을 제외한 총 138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으며,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56명을 제외하고 피해자 82명의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2016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남녀별

행위자 181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7명(81.2%), 여성이 34명(18.8%)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14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 표 3-1-1. 성별 분석 〉

구 분 성 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147	81.2	50	27.6
여 성	34	18.8	131	72.4
합 계	181	100	181	100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5.9%(6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8.2%), 30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34.3%(6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6%)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1-2. 연령별 분석 〉

구 분 연 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미만	-	-	4	2.2
10 대	3	1.7	10	5.5
20 대	8	4.4	15	8.3
30 대	31	17.1	29	16.0
40 대	65	35.9	62	34.3
50 대	51	28.2	47	26.0
60대 이상	23	12.7	14	7.7
합 계	181	100	181	100

(3)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2%(7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3.1%(60명)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38.7%(7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6.4%(66명)로 나타났다.

〈 표 3-1-3. 교육정도별 분석 〉

구 분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8	4.4	19	10.5
중 졸	22	12.2	15	8.3
고 졸	76	42.0	70	38.7
전문대졸	9	5.0	7	3.9
대 졸	60	33.1	66	36.4
대학원이상	6	3.3	4	2.2
합 계	181	100	181	100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이 24.8%(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2.6%(41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7%(6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6.5%(30명)를 차지하였다.

〈 표 3-1-4. 직업별 분석 〉

구 분 직 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15	8.3	67	37.0
회사원	41	22.6	30	16.5
단순노무	31	17.1	16	8.8
자영업	45	24.8	23	12.7
교육직	1	0.6	3	1.7
전문직	5	2.8	5	2.8
기술직	10	5.5	3	1.7
운전	7	3.9	1	0.6
학생	4	2.2	17	9.4
무직	22	12.2	16	8.8
합 계	181	100	181	100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3.8%(4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0.4%(37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역시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4.7%(9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5. 경제상태별 분석 〉

구 분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6	3.3	5	2.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5	19.3	30	16.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7	20.4	20	11.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4	18.8	16	8.8
500만원 이상	26	14.4	11	6.1
일정한 수입이 없음	43	23.8	99	54.7
합 계	181	100	181	100

(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률혼 부부인 경우가 117명으로 64.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가 22.7%(41명)으로 나타났다. <표 3-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 표 3-1-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분석 〉

구 분 관 계	수 (명)	백분율(%)
법률혼 부부	117	64.6
사실혼 부부	16	8.8
이혼 부부	3	1.7
부모-자녀 관계	41	22.7
남매 관계	2	1.1
조손 관계	2	1.1
합 계	181	100

(7) 혼인형태별¹⁾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9.7%(106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1-7. 혼인형태별 분석 〉

구 분 혼 인 형 태	수(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06	79.7
(남)재혼-(여)초혼	2	1.5
(남)초혼-(여)재혼	11	8.3
(남)재혼-(여)재혼	14	10.5
합 계	133	100

(8) 동거기간별²⁾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가 25.5%(34명)로 가장 많았다.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부부갈등이 오랜 기간 미해결상태로 축적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4.1%(32명)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관심사가 되는 시기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를 통해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3명)에 국한하였다.

2)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3명)에 국한하였다.

〈 표 3-1-8. 동거기간별 분석 〉

구 분 동 거 기 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3	2.3
1년 이상 ~ 5년 미만	20	15.0
5년 이상 ~ 10년 미만	23	17.3
10년 이상 ~ 20년 미만	32	24.1
20년 이상 ~ 30년 미만	34	25.5
30년 이상	21	15.8
합 계	133	100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8%(105명)로 가장 많아 가정폭력 중에서 부부폭력, 특히 아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³⁾이 19.9%(36명)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2.7%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3)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7명, 3.9%)도 포함되었다.

〈 표 3-1-9. 폭력유형별 분석 〉

구 분		수(명)	백분율 (%)
폭력유형			
부부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105	58.0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9	4.9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15	8.2
	아내 및 자녀 폭력	7	3.9
부모-자녀 관계	자녀 폭력	29	16.0
	부모 폭력	12	6.6
기타관계	조부모에 의한 손자 폭력	1	0.6
	손자에 의한 조부모 폭력	1	0.6
	형의 남동생 폭력	1	0.6
	남동생의 누나 폭력	1	0.6
합 계		181	100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4.4%(171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1-10. 폭력행위의 수준에 따른 분석 〉

구 분	수(명)	백분율(%)
폭 력 수 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171	94.4
1주 이상 ~ 5주 미만	9	5.0
5주 이상 - 10주 미만	1	0.6
합 계	181	100

(3) 폭력행위의 정도⁴⁾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밀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행위자 181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는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쉽다.

행위자 181명 모두 경미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87.3%(1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6.7%(157명)로,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67.4%(1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49.2%(89명)로 나타났다. 칼이나 도끼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도 28.7%(52명)에 달했다.

4)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 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언어 폭력(1문항), 경미한 폭력(5문항), 심한 폭력(6문항)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 표 3-1-11.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항 목	폭력동반 유무	
	없음(%)	있음(%)
언어 폭력	-	181(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181(100)
경미한 폭력	-	181(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00(55.2)	81(44.8)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109(60.2)	72(39.8)
4. 배우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16(64.1)	65(35.9)
5. 배우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23(12.7)	158(87.3)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51(28.2)	130(71.8)
심한 폭력	24(13.3)	157(86.7)
7. 배우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2(50.8)	89(49.2)
8.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35(74.6)	46(25.4)
9.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59(32.6)	122(67.4)
10. 배우자 목을 졸랐다.	135(74.6)	46(25.4)
11.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29(71.3)	52(28.7)
12. 배우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134(74.0)	47(26.0)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1) 폭력행사 원인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1%, 134건), 부부간 불신(21%, 88건), 음주(17%, 71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위 세 가지 원인은 순위의 차이는 있더라도 행위자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1%, 134건)로 나타났다.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대화, 특히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다르다’는 갈등표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편향된 남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 순종하고 매사 남편 말에 따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불만도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힘)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21%, 88건)이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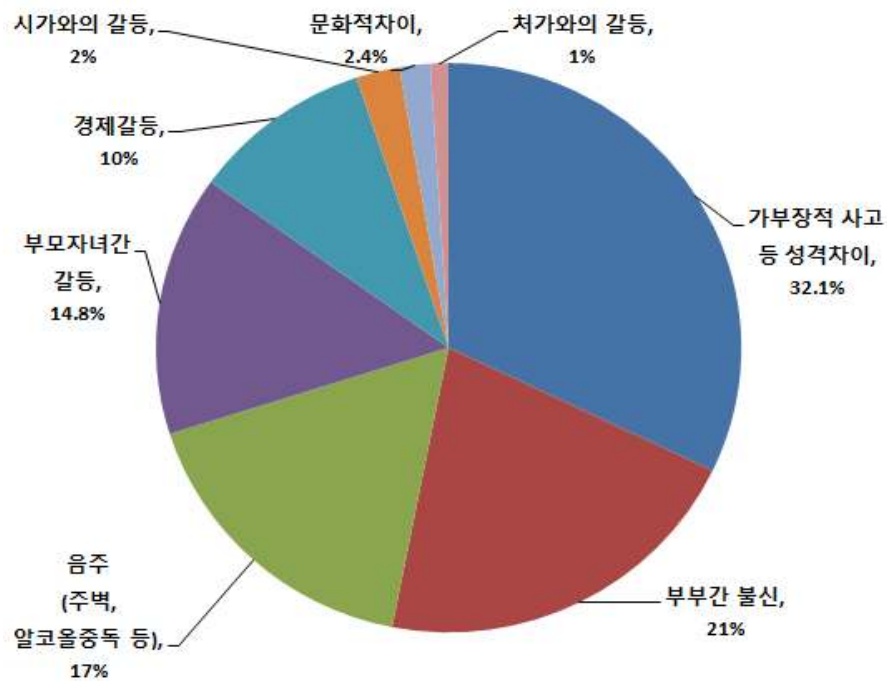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17%, 71건)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4.8%(63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는 14.8%(62건)으로 2013년 8.5%(8건), 2014년 12.5%(21건), 2015년 13.3%(31건)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3-1-12.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

구 분 폭력행사 원인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134	32.1
부부간 불신	88	21.0
행위자 음주 (주벽, 알코올 중독 등)	71	17.0
부모-자녀간 갈등	62	14.8
경제갈등	42	10.0
시가와의 갈등	10	2.4
국가, 언어 등 문화적 차이	7	1.7
처가와의 갈등	4	1.0
합 계	418	100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그림 1. 폭력행사 원인]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1) 상담대상자별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8.4%(160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 표 3-1-13. 상담대상자별 분석 〉

구 분 상담대상자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21	11.6
행위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상담	160	88.4
합 계	181	100

(2) 상담방법별

2016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성장배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사정하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시에는 기초조사를 통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유, 원가족관계 파악, 가정폭력처벌법 및 법적용절차 안내, 상담에 대한 행위자의 기대를 확인, MBTI 검사 실시,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모색 등을 통하여 폭력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배우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상담기간 동안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16년도에는 1,603건의 개별상담, 32건의 부부상담, 31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또한 정신과 연계도 3건 진행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16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8회로 117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2회로 20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상담은 집단역동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과 문제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단피드백을 통해 상호지지 및 대인관계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2016년도에는 행위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 부모폭력 자녀대상 집단상담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간 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단상담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4회 실시되었으며, 총 184명이 참석하였다. 부부 집단상담은 총 33회 실시되었으며, 총 104명이 참석하였다. 자녀폭력 행위자 부모 대상 집단상담은 총 12회 실시되어 총 43명 참석하였고, 부모폭력 행위자 자녀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 실시되어 총 20명 참석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미술심리치료집단상담은 총 6회 실시되어 5명의 폭력노출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동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동지교실’이라는 이름에는 가정폭력과 같

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둥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둥지교실」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족,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둘째,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셋째, 바람직한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도에는 비폭력대화 및 분노조절 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총 11회의 둥지교실 교육강좌가 실시되었으며 총 400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4월, 7월, 11월에 3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행위자 부부 57쌍과 그 자녀 39명 등 총 153명이 참석하였다. 부부캠프를 통하여 부부갈등에 내재된 원인 및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며 분석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 개별상담은 상담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 1시간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총 365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부부갈등문제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도에는 11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총 78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라오니모임이 확장된 제2회 라오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라오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뮤지컬 관람 등 문화적 체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라오니 캠프에는 총 17명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참석하였다.

2016년에 상담이 종료된 181명의 82.3%(149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 관계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1-14. 상담방법별 분석 〉

구 분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	32	17.7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20	11.0
개별상담 · 집단상담	14	7.7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15	63.6
합 계	181	100

(3)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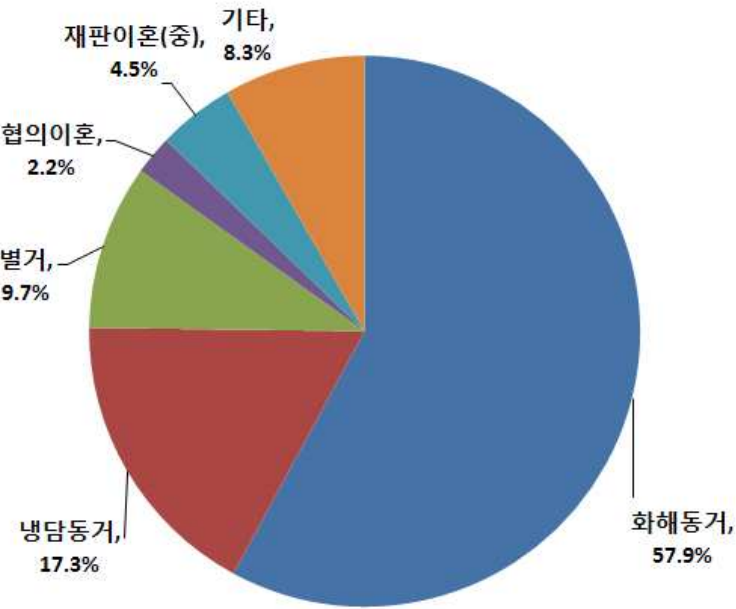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133명) 상담종료시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7.9%(7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거를 결정하였더라도 여전히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는 17.3%(23명)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냉담한 관계에서 동거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종료 후에도 전화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미해결의 상태로 축적되어온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도 6.8%(9명)을 차지하였다. 이혼을 통

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혼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점검해보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표 3-1-15. 상담종료시 부부 관계 분석 〉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화해 · 동거	77	57.9
냉담 · 동거	23	17.3
별 거	13	9.7
협의이혼	3	2.3
재판이혼(중)	6	4.5
기 타 ⁵⁾	11	8.3
합 계	1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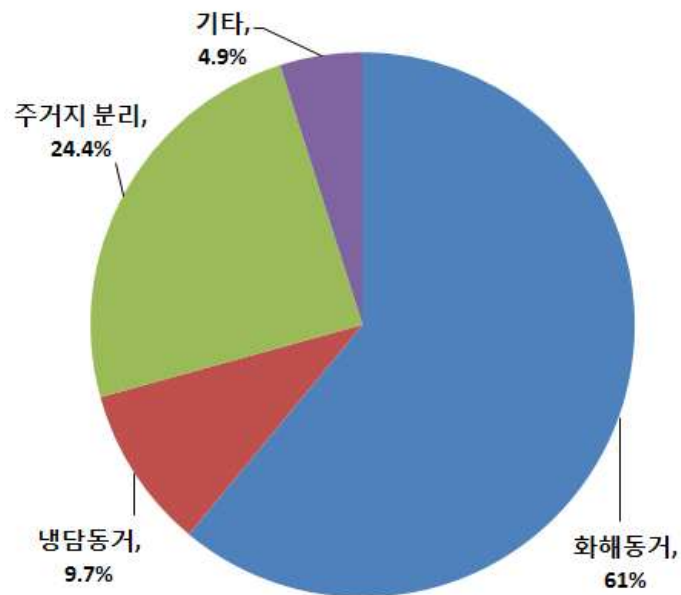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5) 보호처분 변경(7.5%, 10명), 배우자 사망(0.8%, 1명)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41명) 상담 종료 이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61%(2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24.4%(10명)으로 나타났다.

〈 표 3-1-16. 상담종료시 부모자녀 관계 분석 〉

구 분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 · 동거	25	61.0
냉담 · 동거	4	9.7
주거지 분리	10	24.4
기 타 ⁶⁾	2	4.9
합 계	41	100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모자녀 관계]

6) 보호처분 변경(4.9%, 2명) 등을 포함하였다.

제 2 절 피해자 사후조사 결과

1.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피해자 총 181명 중 행위자의 불성실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후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등을 제외한 총 138명에게 피해자 사후조사를 위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56명을 제외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후조사가 완료된 피해자 수는 총 82명⁷⁾이었다.

아래 <표 3-2-1>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성별을 보면 여성이 63명(76.8%), 남성이 19명(23.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9%(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30.5%), 30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39%(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5.3%(29명)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가 46.4%(3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7.1%(14명)을 차지하였다. 월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7.3%(4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내인 경우가 55명(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편⁸⁾과 성인자녀(각 12.2%) 순으로 나타났다.

7) 피해자 사후조사가 완료된 82명은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8) 피해자가 남편인 경우 10명 중 6명은 상호간 폭력으로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 표 3-2-1.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 성	구분		N(%)
성 별	여		63(76.8)
	남		19(23.2)
연 령	20대		5(6.1)
	30대		14(17.1)
	40대		32(39.0)
	50대		25(30.5)
	60대 이상		6(7.3)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12.2)
	중졸(중퇴포함)		3(3.7)
	고졸(중퇴포함)		29(35.3)
	전문대졸(중퇴포함)		5(6.1)
	대졸(중퇴포함)		32(39.0)
	대학원졸(중퇴포함)		3(3.7)
직 업	주부		38(46.4)
	회사원		14(17.1)
	단순노무		5(6.1)
	자영업		11(13.4)
	교육직		2(2.4)
	전문직		3(3.7)
	무직		7(8.5)
	학생		2(2.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2.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4(17.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11.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9.8)
	500만원 이상		2(2.4)
	일정한 수입 없음		47(57.3)
행위자와의 관계	배우자	아내	55(67.0)
		남편	10(12.2)
	부 모	아버지	4(4.9)
		어머니	3(3.7)
	자 녀	성인자녀 ⁹⁾	10(12.2)

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은 행위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가 58.6%(48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2-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

구 분	N(%)
6개월 미만	1(1.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3(40.2)
1년 이상	48(58.6)
합 계	82(100)

3. 상담위탁 보호처분시 및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시 행위자와의 관계

우선 피해자와 행위자가 부부인 경우를 살펴보면,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시에는 86.2%(56명)가 동거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에는 75.4%(49명)로 1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는 6.1%(4명)에서 20%(13명)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표 3-2-3. 상담종결 보호처분 vs.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 행위자와의 관계① 〉

관 계	구 분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시점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
		N(%)	N(%)
부 부	동거	56(86.2)	49(75.4)
	별거	5(7.7)	3(4.6)
	이혼	4(6.1)	13(20.0)
합 계		65(100)	65(100)

9) 성인자녀 10명의 성별의 살펴보면, 여성이 5명, 남성이 5명이었다.

한편 피해자와 행위자가 부부-자녀관계인 경우를 살펴보면,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시에는 58.8%(10명)가 동거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에는 52.9%(9명)로 감소하였다.

< 표 3-2-4. 상담종결 보호처분 vs.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 행위자와의 관계② >

관 계	구 분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시점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
		N(%)	N(%)
부모-자녀	동거	10(58.8)	9(52.9)
	별거	7(41.2)	8(47.1)
합 계		17(100)	17(100)

4.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1) 행위자 고소 당시 원했던 법적조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를 고소할 당시 원했던 법적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첫째,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검을 주고 싶어서’ 신고한 경우가 31.7%(26명)로 가장 많았다. 둘째, 피해자는 법절차를 몰라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경우’가 22%(18명)로 나타났다. 셋째, 1개월 이상의 신체형 ‘형사처벌’을 원한 경우도 20.7%(17명)로 나타났다. 넷째,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원했던 경우가 13.4%(11명)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행위자가 너무 두려워서 경찰의 도움, 구체적으로는 접근금지 등을 통해 ‘행위자와 격리되기를 원한 경우’도 12.2%(10명)로 나타났다.

〈 표 3-2-5. 행위자 고소 당시 원했던 법적 조치 〉

구 분	피해자가 원했던 구체적인 법적 조치 내용	N(%)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행위자에게 겁을 주고 싶어서 신고하였다.	26(31.7)
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저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18(22.0)
형사처벌을 원했다.	1개월 이상의 징역	12(14.6)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5(6.1)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원했다.	-	11(13.4)
행위자가 너무 두려워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행위자와 격리되기를 원했다.	10(12.2)
합 계		82(100)

(2)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적절성

실제 행위자에게 내려진 법적조치인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비추어 보아 적절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피해자의 63.4%(52명)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적절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6.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적절성 〉

구 분	N(%)
적절했다.	52(63.4)
경미했다.	25(30.5)
적절하지 않았다.	5(6.1)
합 계	82(100)

5.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1) 행위자의 폭력성 개선 여부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현재 행위자의 폭력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개선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의 75.6%(62명)은 행위자의 폭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7. 행위자의 폭력성 개선 정도 〉

구 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개 선	20 (24.4)	-	4 (4.9)	1 (2.4)	5 (6.1)	7 (8.5)	11 (13.4)	5 (6.1)	12 (14.6)	2 (2.4)	15 (18.3)		82 (100)

행위자의 폭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62명 중 38.7%(24명)은 그 이유로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3-2-8. 폭력성이 개선된 이유 〉

구 분	N(%)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24(38.7)
갈등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21(33.9)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17(27.4)
합 계	62(100)

(2) 행위자의 폭력 재발 여부

상담위탁 보호처분 이후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의 82.9%(68명)가 신체적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소에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상담효과성 연구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수치(2006년 59.1%, 2008년 63.6%)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2-9. 신체적 폭력 재발 여부 〉

신체적 폭력 재발 여부	없음	있음
	N(%)	N(%)
신체폭력	68(82.9)	14(17.1)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68명의 경우,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20.6%), 협박이나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11.8%), 생활비를 중단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7.4%), 재물손괴(2.9%)는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10. 신체적 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재발된 경우 〉

폭력 재발 여부	없음	있음
	N(%)	N(%)
언어적 폭력	54(79.4)	14(20.6)
정서적 폭력	60(88.2)	8(11.8)
경제적 학대	63(92.6)	5(7.4)
재물손괴	66(97.1)	2(2.9)

(3)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 중단 이유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68명의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6.8%), 다음으로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5%).

〈 표 3-2-11. 행위자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이유 〉

구 분	N(%)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25(36.8)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17(25.0)
별거 또는 이혼으로 행위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	13(19.1)
폭력을 피해 잠시 밖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7(10.3)
갈등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6(8.8)
합 계	68(100)

6.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피해자의 안전도 점검

(1) 행위자와의 관계 개선 정도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현재 행위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물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개선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의 65.8%(54명)은 행위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12. 행위자와의 관계 개선 정도 〉

구 분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개 선	28 (34.2)	1 (1.2)	2 (2.4)	1 (1.2)	4 (4.9)	10 (12.2)	7 (8.5)	13 (15.9)	9 (11.0)	-	7 (8.5)	82 (100)

(2)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현재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물었다.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의 82.9%(68명)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13.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도 〉

구 분	전혀 안전 하지 않다										매우 안전 하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안 전	14 (17.1)	3 (3.7)	3 (3.7)	2 (2.4)	4 (4.9)	8 (9.8)	7 (8.5)	7 (8.5)	12 (14.6)	2 (2.4)	20 (24.4)	82 (100)

(3)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더욱 안전해지려면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면서 다양한 의견¹⁰⁾을 제시하였다(23.3%). 다음으로

법적 처분이 끝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7.1%).

〈 표 3-2-14.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 〉

구 분	N(%)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19(23.3)
법적 처분이 끝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4(17.1)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13(15.9)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2(14.6)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매스컴 등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9(11.0)
폭력발생 즉시 행위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져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8(9.7)
지역사회별로 무료상담 가능한 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2(2.4)
폭력발생 후 법적 처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2(2.4)
현행 접근금지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1(1.2)
경제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1.2)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강제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1.2)
합 계	82(100)

10) 피해자는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6명, 7.3%), 부부상담 의무화(4명, 4.9%), 개별상담 확대(3.7%), 정신과연계 확대(3명, 3.7%) 및 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3명, 3.7%) 등을 제시하였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본소에 상담위탁되어 2016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 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피해자는 행위자를 고소할 당시 처벌은 원하지 않았으며 행위자가 다시는 폭력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싶었다는 심리적 욕구를 알 수 있었다.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비추어 보아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적절했으며, 이를 통해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폭력성 또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면서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신체적 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고 행위자와의 관계 또한 개선되어서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지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정폭력 상담의 개입방향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발생시 법절차를 몰라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경우(22%)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무시,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가재도구 등 기물을 파손하여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정미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의 경우(30.5%) 6개월의 처분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현행 6개월의 처분기간으로는 행위자의 행동 및 정서가 변화되기에 부족하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의 과정으로 구성하되 행위자의 생업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개입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상담기간과 횟수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인 ‘가정보호’와 ‘인권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조치라고 응답하였다(23.3%). 가족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과 치료연계를 통해 심리적인 접근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정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가해자의 폭력행위 축소보고, 형식적인 상담처분 이행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의견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행위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공동생활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한데 행위자는 보복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7.4%). 또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까봐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된 후 보호처분 기간까지 일정기간동안 생활

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 주 제 발 표 |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2017.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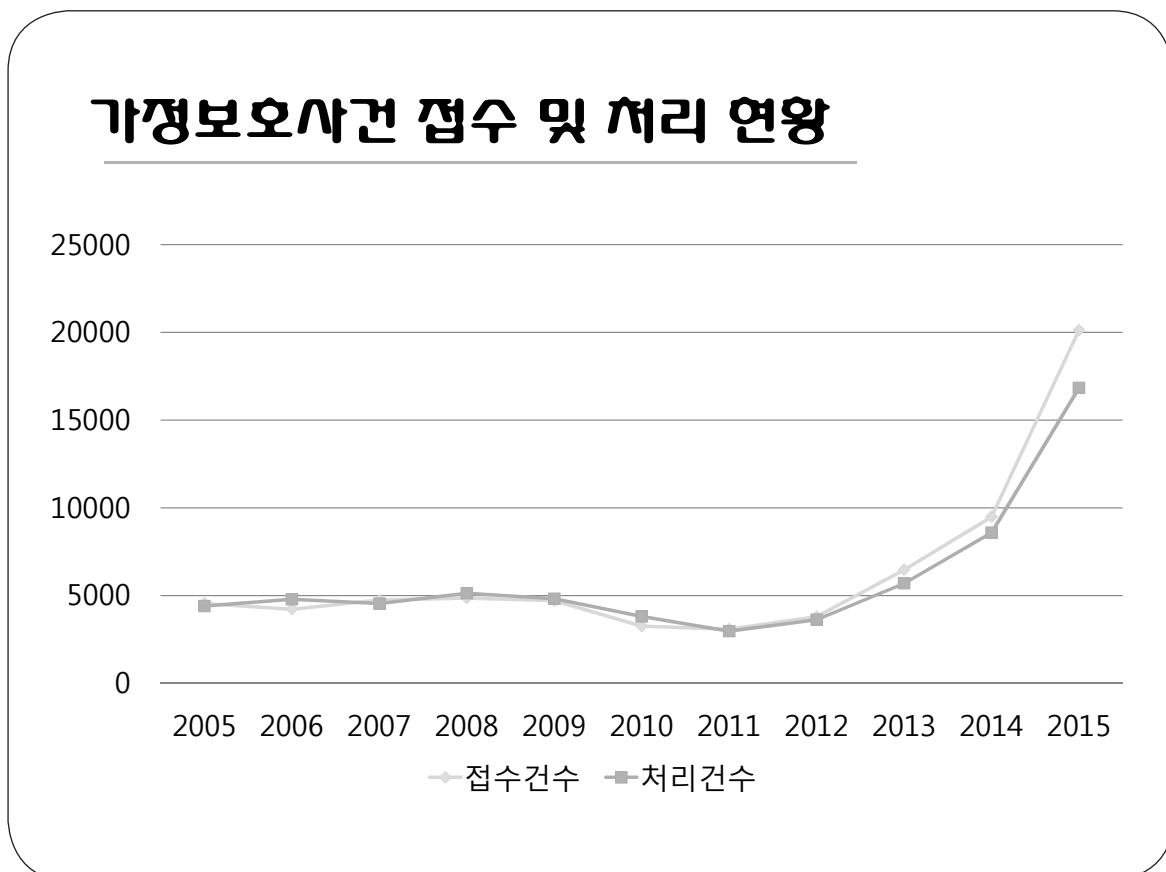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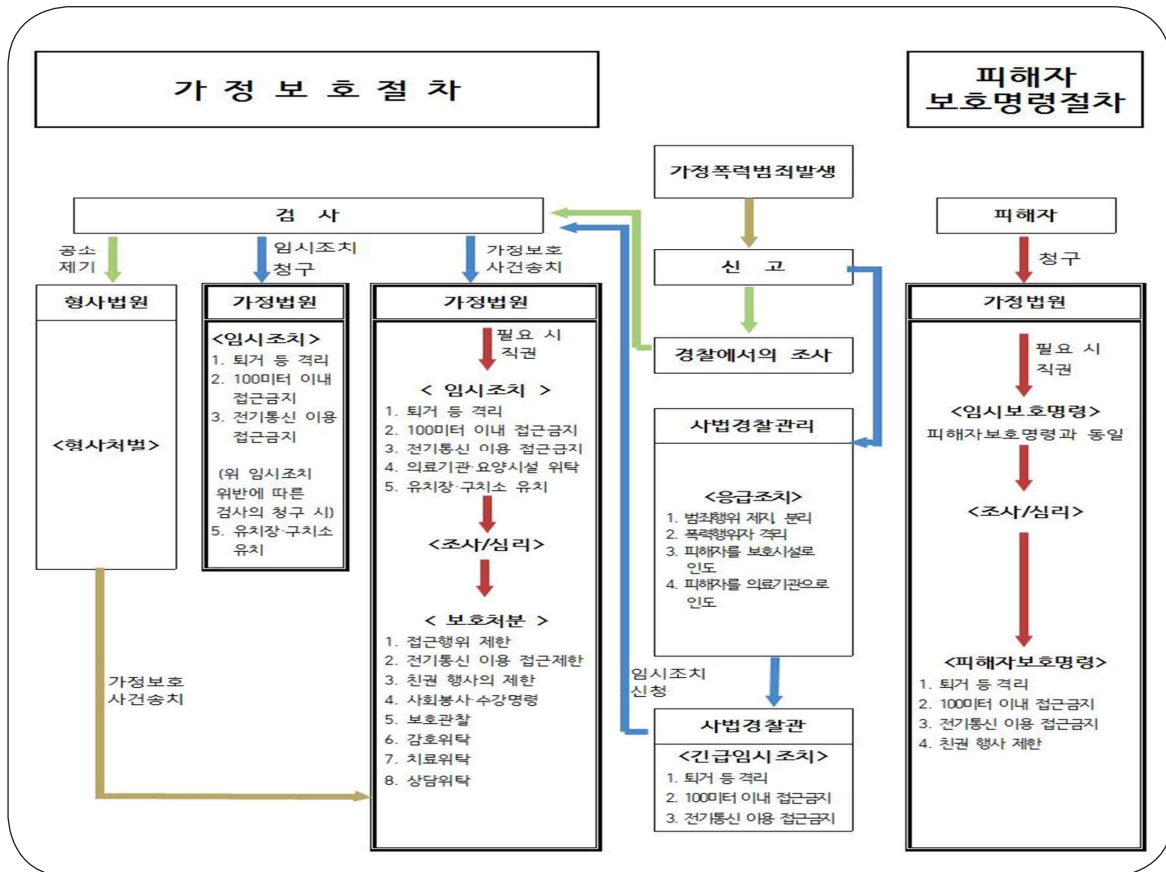
목차

- I 가정보호재판실무 개관
- II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 적용범위
- III 임시조치
- IV 보호처분
- V 피해자보호명령
- VI 배상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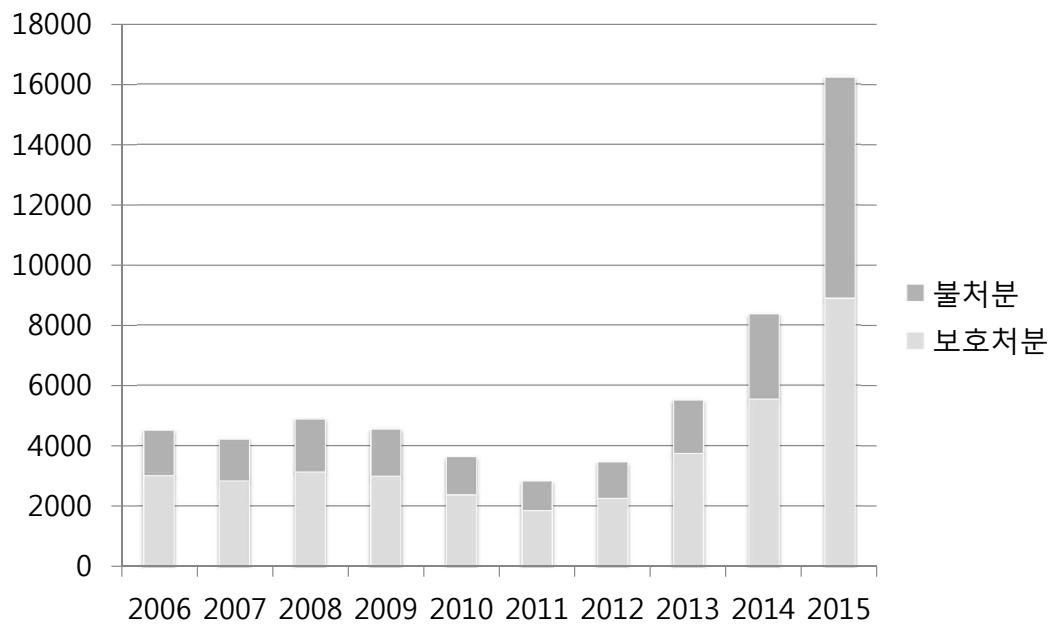
I. 가정보호재판실무 개관

특례법 입법 경위

- 과거 가정폭력 방지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존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과 방지의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의 특례 규정
 - 2011. 7. 25. 피해자보호명령 절차가 추가됨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통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가정보호사건 처분 연왕



Ⅱ.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적용범위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의 특례

- 고소특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가능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특례

행위자의 환경조정과 성행교정

-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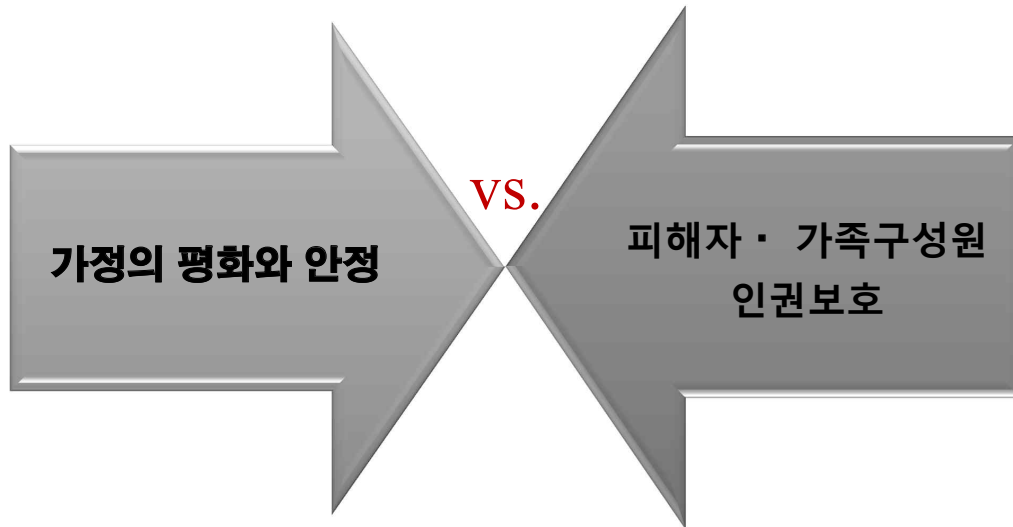
가정의 평화와 안정

-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당시의 주 목적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

- 2002. 12. 18. 개정당시 추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 아래,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의 목적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보호처분을 근간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상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라는 가치 역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함.

적용범위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사실혼 관계 포함
- 배우자였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 사실상의 양친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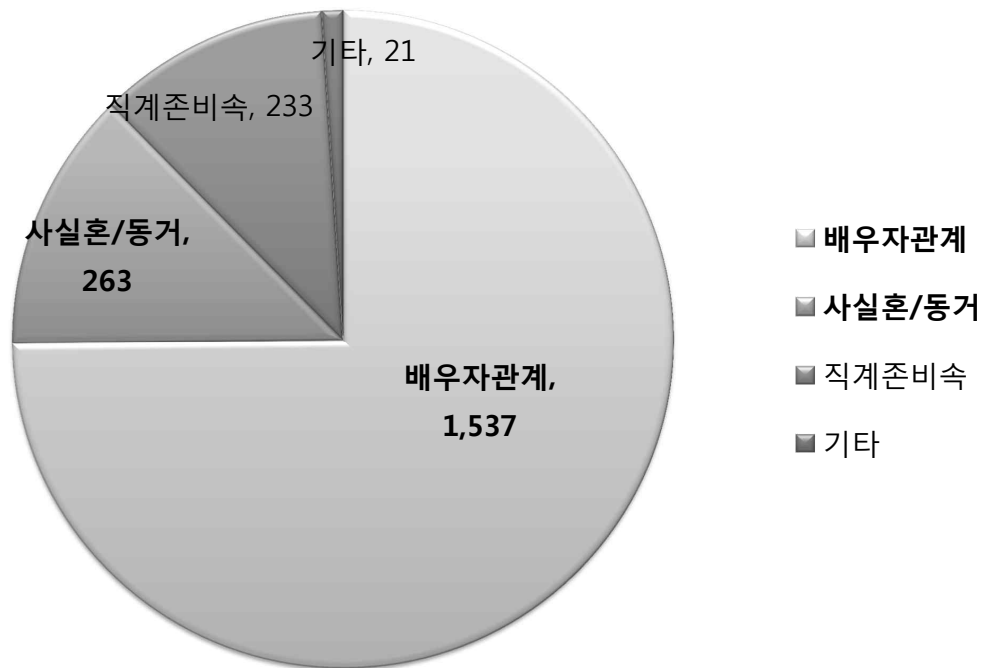
계부모와 자녀, 적모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

- 형제자매 등

배우자였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 - 오로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만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아님.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현실적 필요 있음.

가정보호사건의 양상



배우자 및 사실혼/동거관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적용범위 - 가정폭력범죄

1997. 제정 당시

- (존속, 중)상해, (존속, 특수)폭행, (존속)유기, 영아유기, (존속)학대, 아동학사죄
- (존속, 중, 특수)체포, (존속, 중, 특수)감금, (존속, 특수)협박,
-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 주거·신체 수색의 죄
- 강요, 공갈, 재물손괴

2012. 개정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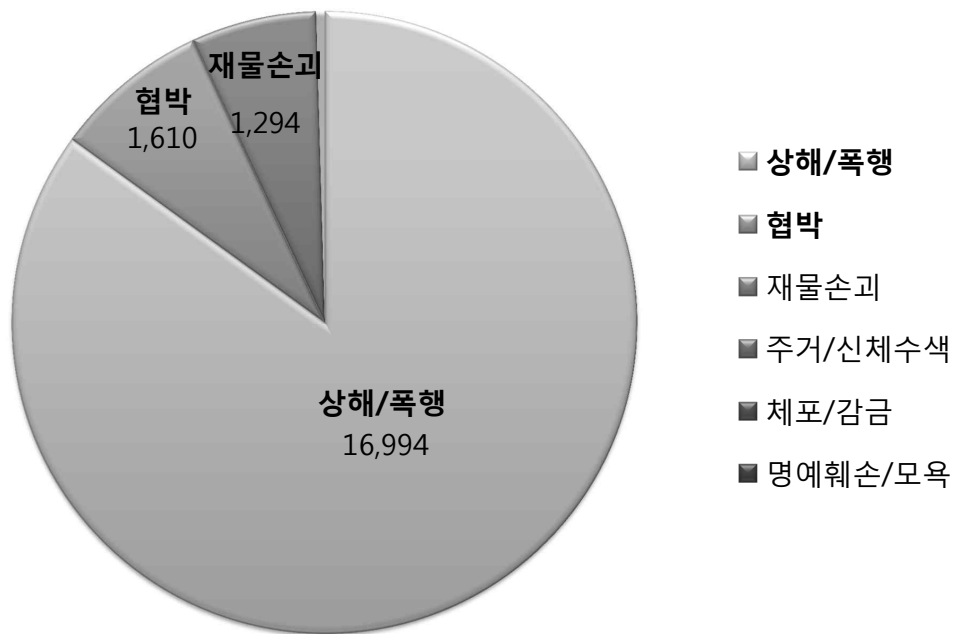
-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모욕 - 친고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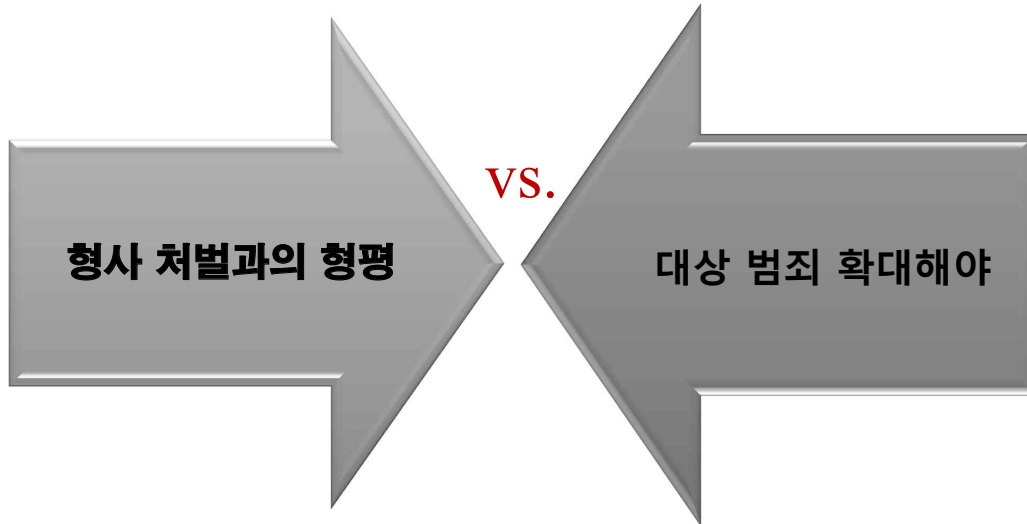
2012. 개정 당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와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포함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가정보호범죄의 태양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반의사불벌죄 - 대부분이 처벌불원하는 사건. 접근금지 제외한 보호처분의 경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보호처분취소의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가정폭력처벌법 대상 범죄



대상범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형사처벌과의 형평상 반대하는 견해

2012. 개정 당시 추가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 형사처벌과 형평에 문제가 있음.

한편 살인미수와 같은 경우 피해자보호의 필요가 있음에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한 범죄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형사 처벌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제안함.

Ⅲ. 임시조치

임시조치 (법 29조)

처분		기간	불이행
1호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총 6개월)	500만원 이하 과태료
2호	100m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1개월 (1회 연장 /총 2개월)	
5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검사는 1호-3호 청구 가능 : 임시조치위반, 재발우려의 경우 5호 청구 가능

임시조치의 문제점

불이행시의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행법 체포 등 개입 어려움
- 검사 청구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검사의 청구없이 5호 구치소 유치 불가

집행의 어려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접근금지 / 치료위탁 / 유치명령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것

- 검사가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소년부 송치하는 경우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정 보호심판규칙)

유치 집행의 어려움

- 1개월(+1개월) - 직장 병행 불가

임시조치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효성 없음.

특히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더 급박하고 중한 사례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달리 구치소 유치가 불가함.

임시조치는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검사가 사건이 더 중하다고 보아 행위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음. - 피해자 보호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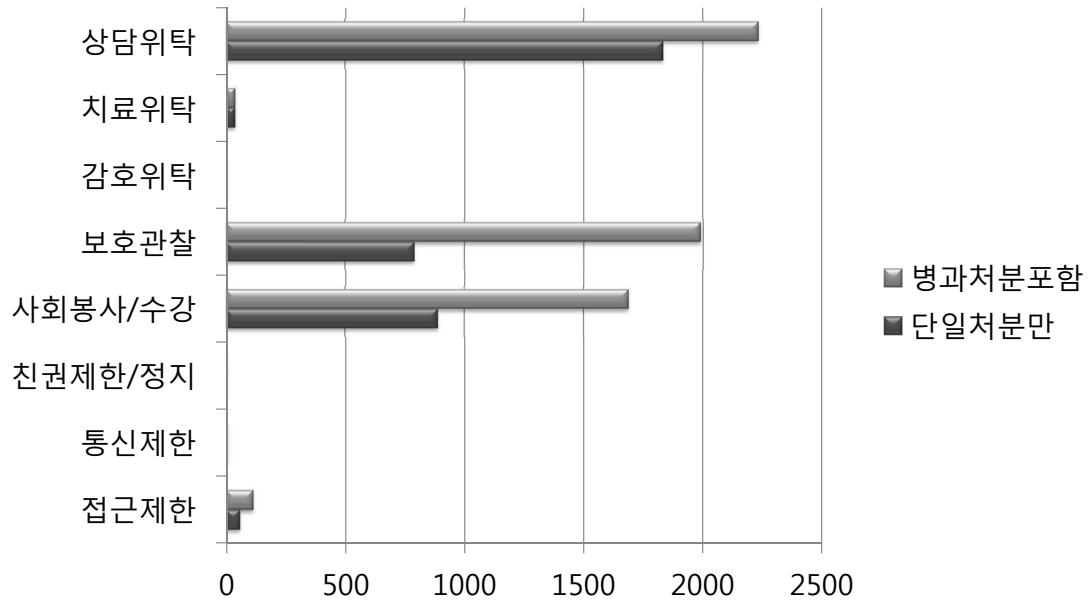
IV. 보호처분

보호처분(법 40조)

		기간	불이행
1호	접근행위 제한	6월(+6월)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호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 제한	6월(+6월)	
3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6월(+6월)	
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200시간 (+200시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호	보호관찰	6월(+6월)	
6호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한 보호시설 감호위탁	6월(+6월)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6월(+6월)	
8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6월(+6월)	

- 처분 병과 가능,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변경 가능
- 4호-8호 의견서 보고서 제출

보호처분 연왕(2014)



심리절차에서의 문제점

당사자 불출석 문제

- 불출석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
- 동행영장 집행의 어려움

행위자의 저항 및 인식 부족

- 개인적인 가정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인식
- 다 잊고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불만

피해자의 저항 및 인식 부족

- 진술의 번복, 비협조
- 행위자의 성행 개선보다 생업 중시하는 태도
- 피해자 의사 존중의 딜레마

접근금지 등 처분의 문제점

보호처분의 집행

- 가정보호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함.(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접근금지 등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려면 관할 경찰서의 협조가 필수적임.

집행감독의 어려움

- 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하게 함(가정보호심판규칙)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

-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접근금지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결국 관할 경찰서에서 집행지휘에 따라 수시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함.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경우 임에도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수강/봉사, 보호관찰, 감호위탁 처분의 문제점

수강

- 직장 등 병행의 어려움, 프로그램 및 대상의 다양화 필요,
- 형식적 순응의 경우 확인의 어려움

사회봉사

-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견해

보호관찰

- 짧은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

감호위탁

- 감호위탁시설의 부재 - 가정폭력 방지법이 정한 감호위탁 시설

실효성없음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보호처분 취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44조)

조사관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사관은 법 44조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서면 보고하게 할 수 있음 (가정보호심판규칙 53조)

치료위탁처분의 문제점

수탁기관 지정의 어려움

- 적합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적 한계

치료위탁 집행의 어려움

- 증상에 대한 인식 부재

집행기관 협조의 어려움

- 거부, 입원 거부의 경우
- 가정보호심판규칙 - 수용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료위탁 예산의 부족

- 예산부족으로 국고부담결정 소극적

실효성없음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보호처분 취소

가정보호심판규칙 상의 관련 규정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치료 위탁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임시조치/치료위탁을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이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규칙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음.

특히 가정보호(아동보호) 행위자의 경우 병식이 없고, 피해자가 행위자를 입원하는데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정신건강증진법상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만 규정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법상의 규정 필요.

상담위탁처분의 문제점

상담 위탁기관 지정의 어려움

- 적합한 상담기관이 없는 지역적 한계

상담위탁 집행의 어려움

- 형식적 상담 순응의 경우 확인의 어려움
- 상담 불응의 경우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없음

피해자 협조의 어려움

- 부부상담 거부
- 생계를 우선시하는 태도

상담위탁 예산의 부족

- 예산부족으로 상담의 질 편차

실효성없음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보호처분 취소

V.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법 55조의 2)

보호명령		기간	불이행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6월 (2개월 단위로 연장/ 총 2년 초과 x)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임시보호명령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 이행실태조사

피해자보호명령의 문제점

임시/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결정서 등본을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지휘

이행실태조사의 어려움

- 가정보호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가정보호심판규칙)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접근금지 보호처분의 경우와 동일한 집행의 문제.

오로지 퇴거, 접근금지 등 소극적 처분에 한정되어 있음. - 경제적 폭력 등의 경우 대처 불가능

V. 배상명령

배상명령

배상신청(56조)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57조)

-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금액 등 지급 명

배상명령선고(58조)

-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신청각하(59조)

-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신청이 이유없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015년 4건 접수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부양료 및 치료비 지급 신청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고

경제적 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여전히 부족 -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이외 아무런 제재 없음. 가사 비송 재판으로서 부양료 지급 청구로 해야



감사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토론문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세대 간 전승되는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 범죄 중 가장 일상적이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잠행성이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정서발달상 문제를 겪는 비율이 높고 폭력의 학습으로 폭력에 대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¹⁾

이러한 가정폭력은 과거 가정 내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단순히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로 전이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가해자처벌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강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 김은경 외,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총서 14-AA-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7면 이하;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2012, 139면.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특히 아동학대와 맞물려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²⁾과 함께 그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이어져 왔고, 그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범죄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에 더욱 심각한 것은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사건의 약 30% 정도가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그 만큼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³⁾

<표 1> 최근 10년간 살인범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연도	계	가족 등 친밀한 관계				비가족관계 ⁴⁾	미상
		소계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2006	959(100.0)	289(30.1)	104	142	43	504(52.6)	166(17.3)
2007	968(100.0)	286(29.5)	93	163	30	491(50.7)	191(19.7)
2008	989(100.0)	280(28.3)	93	149	38	541(54.7)	168(17.0)
2009	1,208(100.0)	345(28.6)	122	179	44	623(51.6)	240(19.9)
2010	1,073(100.0)	343(32.0)	114	182	47	580(54.1)	150(14.0)
2011	1,236(100.0)	369(29.9)	123	195	51	694(56.1)	173(14.0)
2012	1,116(100.0)	364(32.6)	101	208	55	582(52.2)	170(15.2)
2013	1,047(100.0)	323(30.9)	108	166	49	565(54.0)	159(15.2)
2014	1,063(100.0)	347(32.6)	108	187	52	514(48.4)	202(19.0)
2015	1,050(100.0)	352(33.5)	102	198	52	505(48.1)	193(18.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2016 재구성.

2) 김은경,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2, 678면 이하.

3) 김은경 외, 앞의 보고서, 48면 이하.

4) 비가족관계에는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가 포함되어 있다(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584면 이하 참조).

그런 점에서 2002년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추가된 것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대상은 발제문의 가정보호사건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아내, 자녀, 노인, 이주 결혼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여성, 특히 아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⁵⁾

발제자께서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 아래,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의 목적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보호처분을 근간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상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라는 가치 역시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가정폭력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가정폭력문제에서 피해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2. 유럽의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입법동향⁶⁾

1) 독일

과거 독일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독일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1970년대부터 가정폭력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75년 ‘세계여성의 해(das Internationale Jahr der Frau)’를 계기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남성들의 가정폭력 실상이

5) 김은경 외, 앞의 보고서, 33면.

6) 김혜정,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5, 127면 이하 참조.

드러나면서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이 재차 인식되게 되었다.⁷⁾ 이에 1996년 12월 독일 연방정부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과의 투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문제 남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찰·감시하고, 검찰과 법원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을 중벌로 다스리는 방침을 정하였다.⁸⁾

1999년 12월 1일 독일연방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투쟁을 위한 연방정부의 활동계획(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 zur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vom 24. 02. 2000)’⁹⁾을 책정하면서 입법에 대한 여론은 가속화되었고, 이에 민사법 및 형사법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입법을 포함한 대응조치가 검토되었다. 그 결과, 2001년 3월 5일 독일연방의회에 제출된 ‘폭력범죄와 스토킹에 있어 민사법적 보호의 개선과 별거에 있어 부부주거의 인도를 쉽게 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s zivilgerichtlichen Schutzes bei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sowie zur Erleichterung der Überlassung der Ehewohnung bei Trennung, vom 11. 12. 2001)’¹⁰⁾이 2001년 12월 11일 공포되었다. 또 동법에 의거하여 ‘폭력범죄와 스토킹에 있어 민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Gewaltschutzgesetz(폭력방지법¹¹⁾))’¹²⁾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01년 12월 11일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³⁾ 독일은 동법률에서 “때린 사람은 나가고, 맞은 사람은 머무른다(Der Schläger geht, der/die Geschlagene bleibt)”는 원칙을 실현하였다.¹⁴⁾

독일연방정부는 여성과 아동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이 폭력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권리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2007

7) 박소현,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의정논총 제8권 제2호, 2013, 223면 이하.

8) 박소현, 앞의 논문, 224면.

9) BT-Dr. 14/2812.

10)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01 Teil I Nr. 67.

11) ‘Gewaltschutzgesetz’를 직역하면 ‘폭력보호법’이지만, 이러한 명칭이 법률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부적합할 수 있어, ‘폭력방지법’으로 의역하였다.

12) BGBl. I S. 3513.

13) Keller, Häusliche Gewalt und Gewaltschutzgesetz, Richard Boorberg Verlag GmbH, 2008, S.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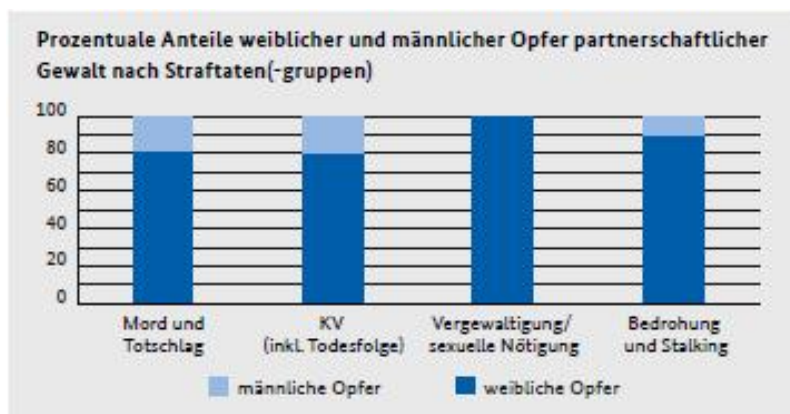
14) Keller, a.a.O., S. 133.

년 9월 26일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투쟁을 위한 활동계획(Aktionsplan zur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Aktionsplan II)’을 완성하였다. 특히 ‘활동 계획 II(Aktionsplan II)’는 이주민 여성과 장애여성을 보다 잘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조기에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⁵⁾ 참고로 2015년 독일연방수사국(Bundeskriminalamt : BKA)의 통계에 따른 긴밀한 관계에서 폭행에 의한 범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¹⁶⁾

<표 2> 긴밀한 관계에서 폭행에 의한 사건

범죄유형	등록된 사건 수
상해치사(Körperverletzung mit Todesfolge)	6
중상해(schwere Körperverletzung)	76
고살 및 모살(Mord und Totschlag)	415
강간, 성적 학대(Vergewaltigung, sexuelle Nötigung)	2,436
스토킹(Stalking)	8,776
위험한 상해(gefährliche Körperverletzung)	16,054
협박(Bedrohung)	18,300
고의에 의한 단순상해(vorsätzliche einfache Körperverletzung)	81,394

<표 3> 파트너에 의한 폭력범죄에서 남녀피해자 비율¹⁷⁾



15) Keller, a.a.O., S. 136f.

16) <http://www.koerperverletzung.com/haeusliche-gewalt/>(2017. 6. 13 최종검색).

17) Bundeskriminalamt, Partnerschaftsgewalt Kriminalstatistische Auswertung – Berichtsjahr 2015, S. 5.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비단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15년 독일연방수사국에서 발표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범죄에서 남녀피해자 비율을 살펴보면,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독일의 폭력방지법¹⁸⁾은 민사적 처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차이가 있다. 즉 동법률은 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임에도 민사법·형사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법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동법률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단순하지만, 단호한 대처로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데, 동법률의 제정 이후에 가정폭력이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특히 2000년 이후 시범적 전자감독을 실시해온 Hessen州 법무부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내를 때려서 가정폭력범주(im Rahmen der häuslichen Gewalt)에서 상해죄로 여러 차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던 자가 또 다시 보호관찰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보호관찰 취소와 함께 형집행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여 그로 인해 다시 체포되어 새로운 범죄에 따른 형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때, 법원

18) 폭력방지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추가적인 침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야하고, 연장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의 유형으로 제1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는 것, 제2호에 피해자 집으로부터 일정거리에 머무르는 것, 제3호에 피해자가 규칙적으로 머무르는 특정한 다른 곳에 방문하는 것, 제4호에 통신장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연결을 시도하는 것, 제5호에 피해자와 만남을 야기하는 것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명령을 나열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범죄행위 시에 가해자와 계속적인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던 주거에서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주거를 임대한 경우, 주거인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용익권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거의 양도기간을 정해야 하고, 만약 가해자 단독 혹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등을 갖고 있거나 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양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피해자가 적절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해자 등의 보다 우월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피협박자가 범행 시에 친권자, 대리인 등의 관계에 있을 때 친족법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조 제1항 제1문 혹은 제3문, 제2항 제1문에 근거한 명령에 대해 위법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형사법적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자유형 1년 이하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9)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Keller, a.a.O., S. 125ff. 참조.

이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자신의 전 아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있다고 한다.²⁰⁾

2) 스위스

1990년대 말 스위스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프로젝트(Interventionsprojekte)가 마련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의 패러다임전환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가적 처분을 통한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그것을 통해 부부와 파트너관계에서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공동의 처분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영역에 걸친 협력 작업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부 또는 생활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폭력사안에 직면하게 두지 않고 국가적 개입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역반응언기(Inverantwortungnahme)를 촉진하는 것이다.²¹⁾

대표적으로 St. Gallen州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프로젝트로 소위 “Gewalt Los(폭력에서 해방되기)”를 1998년 시작했고, 2003년 경찰법(Polizeigesetz)에 가정폭력에 대한 처분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2004년에 발간되었고, 그 사이 모든 연방 州는 다양한 가정폭력의 투쟁을 위한 법률적 결정을 가져왔고, 국가적 입법²²⁾이 결정되었다.²³⁾ 참고로 2016년 경찰에 등록된 폭력범죄 중 가정폭력의 비율은

20) <https://www.hessen.de/presse/pressemitteilung/68-straftaeter-der-elektronischen-fussfessel>; (2015.08.19.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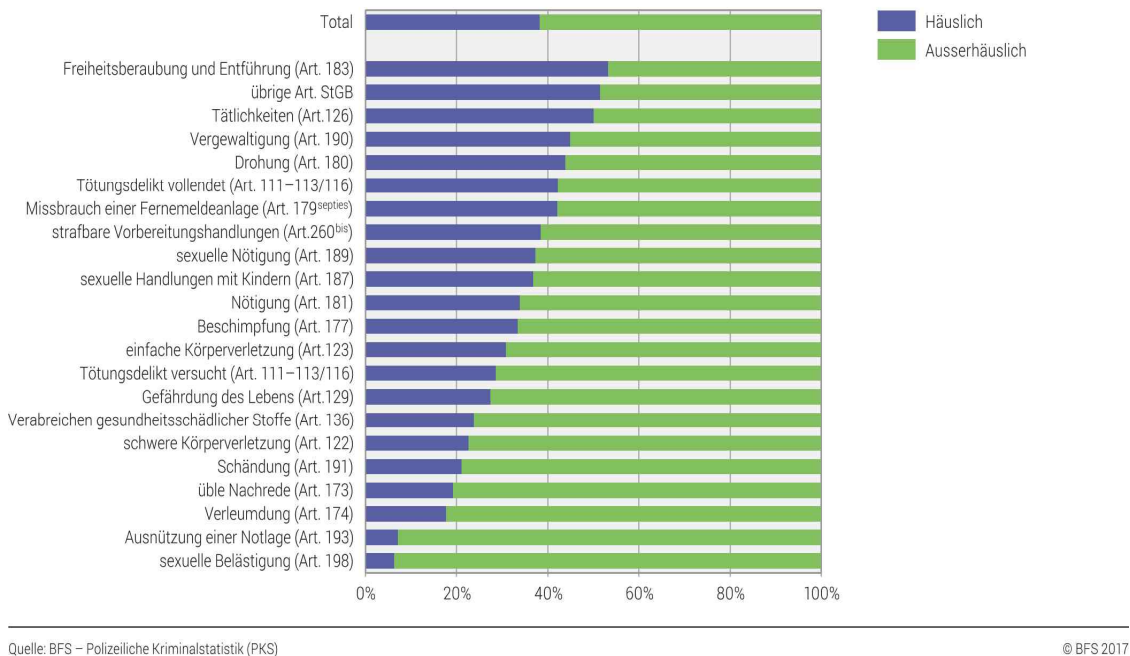
21) Reber, 10 Jahre polizeiliche Massnahmen gegen häusliche Gewalt im Kanton St.Gallen, Kanton St.Gallen Koordinationsstelle häusliche Gewalt 2013, S.4.

22) 스위스에서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력방지법(Gewaltschutzgesetz vom 19. 6. 2006: GSG)은 크게 일반조항(Allgemeines), 보호처분명령(Anordnung von Schutzmassnahmen), 공동절차규정(Gemeinsame Verfahrensbestimmungen), (경찰에 의한) 유치(Gewahrsam), 부수처분(Flankierende Massnahmen)과 부칙(Schlussbestimmu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일반조항에 있는 제1조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의 보호, 안전과 지원을 위한 목적(제1문)을 규정하고 州(Kanton)에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처분과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협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²⁴⁾

<표 4> 2016년 경찰에 등록된 폭력범죄 중 가정폭력 비율

Anteil häuslicher Gewalt an der polizeilich registrierten Gewal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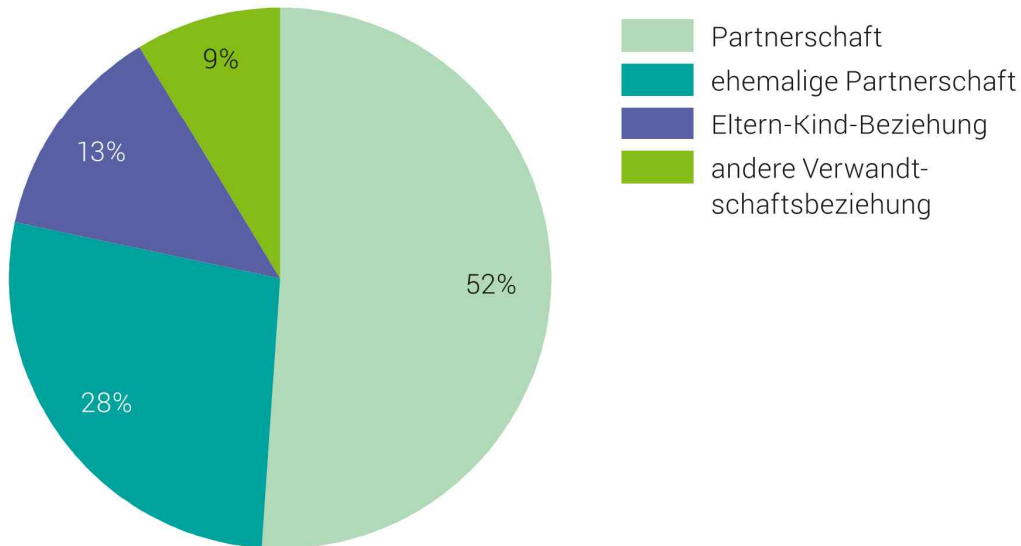
력을 요구하고 있다. 제2조에는 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족 또는 파트너관계에서 a. 폭력의 실행 또는 위협이나, b. 여러 차례 괴롭히기, 숨어서 기다리기, 따라다니기를 통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완전성을 침해받거나 또는 침해받을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제3조 이하에 규정된 보호처분명령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에 경찰이 사안을 파악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문). 특히 경찰은 a. 위험한 사람(가해자)을 거주지나 주거로부터 추방하거나, b. 경찰에 의해 설정된 영역에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거나, c. 위험에 처한 자(피해자)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와 어떠한 형태의 접촉시도도 금지할 수 있다(제3조 제2문). 또한 경찰은 이러한 보호처분명령에 부수하여 ① 가해자가 제2조 제1항에 따른 폭력의 시행 내지 위협으로 매우 위험하고, 임박하며, 다른 방법으로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보호처분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3조 제1항).

23) Reber, 앞의 자료, 4면.

24)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kriminalitaet-strafrecht/polizei/haeusliche-gewalt.html#>(2017. 6. 13 최종검색).

특히 2016년 경찰에 등록된 가정폭력범죄에서 관계에 따른 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부부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olizeilich registrierte Gewaltstraftaten im häuslichen Bereich nach Beziehung, 2016



Quelle: BFS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PKS)

© BFS 2017

특히 스위스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독일과 같이,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협박죄로 4,244명, 상해죄로 2,19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중 2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수치는 스위스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²⁵⁾이 부과되었지만, 그 준수여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가을부터 범죄행위로 유죄판

25) 현재 법원은 스위스 민법 제28조b(Zivilgesetzbuch Art. 28b)에 따라 타인을 위협하거나 스토킹하는 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거나 주거지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형벌이 아닌 민사적 처분으로 잠재적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 <http://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Elektronische-Fussfesseln-gegen-Stalking/story/29003110>. (2015.08.19. 최종검색).

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받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여야 한다.²⁶⁾

사실 스위스는 지난 15년 동안 7개 州(Kanton)에서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EM)을 실시해왔다. 이는 주로 20일 이상 1년 이하 복역할 범죄자를 대상으로 저녁시간과 주말에 가택구금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집에 머물러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Zürich州에서 2014년 가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시범실시는 범죄자를 GPS방식을 통해 실시간(Echtzeit)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종래의 전자감독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²⁷⁾

Zürich州 전역에서 GPS를 이용한 첫 번째 시범실시는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촉금지와 접근금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자신의 가족이 머무는 집에 접근금지를 받은 남편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감독업체는 먼저 남편에게 전화해서 금지를 알려주거나, 만약 위험한 경우에는 아내 혹은 경찰에게 경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²⁸⁾ 따라서 앞으로 법원은 가정폭력 혹은 스토킹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감독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연방은 이를 위한 법개정을 제안하였다.²⁹⁾

26) <http://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Der-schnelle-Griff-zur-Fussfessel/story/18158851>. (2015.08.19.최종검색).

27) <http://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Zuerich-ueberwacht-Straftaeter-mit-GPS/story/10288022>. (2015.08.19.최종검색).

28) 위의 자료 참조.

29) <http://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Elektronische-Fussfesseln-gegen-Stalking/story/29003110>. (2015.08.19. 최종검색).

3)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을 입법화한 오스트리아는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연방법률(Bundesgesetz zum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³⁰⁾ : Gewaltschutzesetz)’을 제정하여 1997년 5월 1일 시행하였다.³¹⁾

이러한 폭력방지법(Gewaltschutzesetz)은 가능하면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와 함께 1999년 안전경찰법(Sicherheitspolizeigesetz)³²⁾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3년 강제집행법(Exekutionsordnung)³³⁾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가하면 법률적 요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개정된 제2차 폭력방지법(2. Gewaltschutzesetz)³⁴⁾이 2009년 6월 1일부터, 개정 안전경찰법(SPG-Novelle)³⁵⁾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³⁶⁾

오스트리아에서는 폭력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없다. 폭력방지법은 경찰에게 폭력의 위험이 있는 가해자가 스스로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살고

30) BGBl. Nr. 759/1996.

31) 1997년 폭력방지법에는 크게 경찰의 퇴거 및 출입(접근)금지 처분, 법원의 임시처분, 그리고 폭력을 당한 여성의 보호라는 3가지 조치가 포함되어있다. 경찰처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주거에서의 퇴거 및 재출입금지의 조치를 들 수 있고, 14일의 최초기간은 스위스와 동일하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범으로 처벌한다.

32) BGBl. I Nr. 146/1999.

33) BGBl. I Nr. 31/2003.

34) BGBl. I Nr. 40/2009.

35) BGBl. I Nr. 152/2013.

36)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경찰법(Sicherheitspolizeigesetz: SPG)은 폭력방지법을 확장하여 14세 미만의 미성년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학교, 유치원 등을 둘러싼 50미터 이내 공간의 접근금지도 추가하고 있다. 즉 안전경찰법 제38조a에 출입금지와 퇴거명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동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에 있어 경찰은 위험한 자(가해자)를 위험에 처한 자(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로부터 퇴거명령(Wegweisung)을 하거나 2주 동안 출입금지(Betretungsverbot)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만약 출입금지를 위반하면 행정위반이 되어 최고 5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퇴거명령 및 출입금지의 부과여부를 위한 위험평가와 그에 대한 결정은 경찰에게 있다. 출입금지의 법적효력은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안전관청(Sicherheitsbehörde)으로부터 심사되어야 한다.

있는 집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2주 동안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때린 자는 나간다(Wer schlägt, der geht)”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국가에서 폭력보호센터와 그 지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적극적으로 무료로 지원하며, 퇴거명령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동 기관과 접촉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가족 내에서 살인 내지 살인미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³⁸⁾ 아래의 <표 5>에서 비록 ‘핵가족(Kernfamilie)’ 내의 살인범죄에 대한 통계 내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는 있다.³⁹⁾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족관계(동거 또는 비동거 포함) 안에서 살인(미수)로 기소된 157건 중에 살인(미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47건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Beziehungsdelikt)’이다. 다시 말해서 - 다른 범주로 조심스럽게 어림잡는다면 - 살인(미수)의 약 30%가 가족 안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⁴⁰⁾

37) <http://www.frauenhaus-voecklabruck.at/de/gewalt-gegen-frauen/gewaltschutzgesetz/>: (2015.08.19.최종검색)

38) 오스트리아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s für Inneres)는 “가족(familiär)”이라고 할 때, 그 개념에 ‘핵가족(Kernfamilie)’ 뿐만 아니라 친인척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에서 동거(in Hausgemeinschaft)뿐만 아니라 비동거(ohne Hausgemeinschaft)까지도 가족의 범주로 조사하고 있다(Haller, Gewalt gegen Frauen “High-Risk Victims”, Bundesministerin für Frauen und Öffentlichen Dienst im Bundeskanzleramt Österreich, 2012, S. 7).

39) 오스트리아 연방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살인피해자의 약 1/4이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ller, a.a.O., S. 8).

40) Haller, a.a.O., S. 8f.

〈표 5〉 2007년-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기소된 살인 및 살인미수⁴¹⁾

살인/살인미수	2007	2008	2009	2010
가족관계(동거) familiäre Beziehung(in Hausgemeinschaft)	25	27	37	37
가족관계(비동거) familiäre Beziehung(ohne Hausgemeinschaft)	13	16	23	17
지인 Bekanntschaftsverhältnis	37	33	36	57
우연히 아는 관계 Zufallsbekanntschaft	5	10	14	12
모르는 사람 keine Beziehung	25	19	21	33
미상 Beziehung unbekannt	2	0	7	1
계	107	105	138	157

자료 : Sicherheitsberichte der Bundesregierung 2007-2010.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가족범주에서 44건이 모살(Mord), 5건이 고살(Totschlag)로 유죄판결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39건에서 평균 13명의 여성이 해마다 자신과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또는 과거 파트너로부터 살인의도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대로라면, 해마다 약 100,000명의 여성이 과거 또는 현재의 파트너를 통해 살인(미수)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⁴²⁾

비록 오스트리아에서 폭력방지법이 시행된 1997년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경찰의 접근금지와 폭력방지센터 및 중재센터의 역할이라는 두 개의 보호기능의 연결이 특히 작용하여 폭력방지법을 통해 위험상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형태의 살인범죄와 같은 고위험 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피해자보호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⁴³⁾

41) Haller, a.a.O., S. 8.

42) Haller, a.a.O., S. 11.

43) Haller, a.a.O., S. 13.

4) 시사점

가. 가정폭력에서 피해자보호의 최우선

가정폭력범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본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의 공통점은 ‘피해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가정폭력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때린 사람은 나가고, 맞은 사람은 머무른다”는 원칙의 실천, 특히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사적 조기개입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유죄가 먼저 밝혀져야 하므로, 피해자를 조기에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사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독일과 같은 경우도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사법적 대응으로 가정폭력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그런데 현재 우리 가정폭력특례법은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가 혼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을 가정보호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피해자보호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한 정책방향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가정폭력이 단순히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적어도 가정폭력 사안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중범죄로 발전하는 위험성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또 신변안전조치 등이 도입되어 과거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가정폭력특례법의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피해자보호’에 두고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전면

44) 박소현, 앞의 논문, 232면.

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⁵⁾

가정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중요하고, 가정보호도 당연히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보호’에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중심의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가정폭력특례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대부분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대응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민사적 조기개입을 통한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둔 검토⁴⁶⁾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유럽 국가들의 정책현황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감독방안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그 대응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다양한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어 민사적 조기개입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가해자에게 부과된 이러한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부과하였지만, 그 준수여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같이, 가해자에게 아무리 구체적이고 적절한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선에서 활동하는 가정폭력 상담종사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실제 접근금지명령 내지 퇴거명령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효적인 감

45) 그런 관점의 대안과 관련한 한 예로 김은경 외 3인, 앞의 보고서, 327면 이하 참조.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의 도입도 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역시 실효성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민사적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46) 정현미, 앞의 논문, 149면 이하;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49면 이하.

독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⁴⁷⁾

3.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1)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서 “피해자보호”로

발제자께서 “살인미수와 같은 경우 피해자보호의 필요가 있음에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 대안으로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한 범죄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계신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현실에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우 및 성행교정에 초점을 두다보니, 피해자보호는 가해자의 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정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⁴⁸⁾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

47) 물론 독일과 스위스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실시하는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명령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현재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실시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전자감독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전자감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고려해 볼 때, 가정폭력 영역에 전자감독을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앞으로 전자감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48) 정현미, 앞의 논문, 148면.

각된 것은 여성 내지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에 있다고 본다. 특히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가족관계라는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역학적 특수성에 있다. 결국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재범예방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정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형해화되는 위험은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실질적인 목적이 피해자보호에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⁴⁹⁾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2) 문제해결지향적 관점에서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세기 후반부터 형사사법 분야에 전통적 모델과 궤를 달리하는 담론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최근 법원에서도 “형사사법이념의 다양화”라는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난 2015년 개정 치료감호법에 신설된 치료명령제도를 통해 소위 “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형사사법 분야에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면서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 운용의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전통적 법원운용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사사법 모델이 제안되면서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20세기 말부터 문제해결법원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해결법원 중에서도 가정폭력법원에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서는 피해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기 때문에 치료사법과 함께 피해자 관점의 형사사법이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한다.⁵⁰⁾

<표 6> 법원모델과 배경이념

구분	전통법원	약물법원	정신건강법원	가정폭력법원	지역사회법원	화해조정법원
주된 이념	전통적 형사사법	치료사법	치료사법	피해자 관점	공동체사법	회복적사법
보조 이념	치료사법			치료사법	피해자 관점	

49) 김은경 외, 앞의 보고서, 338면 이하.

50) 이재희,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형사제재의 다양화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 15, 3면 이하.

발제자께서는 다양한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등 사회내처우, 치료위탁처분, 상담위탁처분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논거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최근 형사실무에서 전통적 형사사법 틀 안에서 범죄자에게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 내지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시금 범죄를 범하여 또 다시 범죄자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회전문사법’⁵¹⁾의 상황에서는 범죄자의 성행, 병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근본적인 범죄원인을 배제한 채 처벌에만 집착하는 것이 재범가능성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⁵²⁾하면서 문제 해결형 형사사법으로서 ‘치료사법’을 들고 있다.⁵³⁾

발제자께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모델로 문제해결지향적 사법⁵⁴⁾으로 나아가면서, 최근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치료명령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논의와 같이, 보호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치료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3) 문제해결법원으로서 가정폭력범죄 전담제의 도입⁵⁵⁾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범죄도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범죄도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로 인해 쉽게 법적 다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와 함께 이혼 및 양육비 등 민사관련 소송이 함께

51) 김동현,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 형사책임론의 문제”, 법학 제51권 제4호, 2010, 270면.

52) 이재희, 앞의 논문, 3면.

53) 이승호,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809면 이하.

54) 가정폭력처벌법 입법패러다임의 전환방향과 관련하여 김은경 외, 앞의 보고서, 328면 참조.

55) 김은경 외, 앞의 보고서, 341면 이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복범죄 내지 경제적 곤란 등 피해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족관계라는 친밀성을 근거로 한 역학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담부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가정폭력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경찰의 초기대응에서부터 민사적 분쟁까지 한 재판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전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⁵⁶⁾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형사사건, 이혼사건, 가정폭력보호사건 등 일체의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통합재판부(IDV법원)를 설치하여 법원에서 한 명의 판사가 가정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한 가족의 형사사건, 가정법원사건, 이혼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⁵⁷⁾ 우리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한 명의 판사가 가정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한 가족의 형사사건, 가정법원사건, 이혼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문제해결법원방식의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를 전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또 이러한 문제해결법원방식의 가정폭력전담재판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굳이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분리하지 않고, 가정폭력전담재판부에서 판단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추구하는 형사절차의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종래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이송시킴으로써 가정법원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피해자보호가 형사법원에서 단절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형사절차의 단일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56)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15면 이하.

57) 김은경 외, 앞의 보고서, 341면 이하.

그 밖에 발제문의 가정보호사건 처분현황에서 2015년 불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현장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과제

우 철 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I. 들어가며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특별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그간 부부싸움이나 사적영역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제 이러한 인식개선이 아동학대·노인학대 등 그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식변화 외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각종 통계수치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경찰에서도 예방과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가 구축* 되고 여기에 맞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그동안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가정폭력 신고가 1.4배 가량 증가하였고, 검거건수는 2.7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 이 한번 일어났던 가정에서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측정하는 ‘가정폭력 재범률’은 같은 기간 동안 11.8%에서 3.8%로 감소하였다.

- * 여성청소년수사팀('15년)·학대예방경찰관('14년 발족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16년 확대 개편) 신설 및 전수합심조사·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및 통합 솔루션팀 운영 등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13년~'16년)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신고건수	160,272건	227,608건	227,727건	264,528건
검거건수	16,785건	17,557건	40,822건	45,614건
구속인원	262명	250명	606명	509명
재범률	11.8%	11.1%	4.9%	3.8%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부재 등 현장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향후 가정폭력 대응체계 전반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현황을 설명하고 발제문에서 언급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보충 설명 후 개선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현황 및 발제문 관련 토론

1.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현황

경찰은 '13년 발족한 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을 '16년에 확대 개편하여 현재 총 334명의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252개 경찰서에 3~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노인학대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전일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에 대한 콜-백을 통해 초동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재발우려가정 여부를 지정하는 「전수합심조사」가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정된 재발우려가정에 대하여 그 위험성 및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A·B등급을 나눠 매월 또는 격월로 방문(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후모니터링」 활동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고위험 가정에 대하여 상담소·지자체공무원·병원·법률전문가 등과 합동회의를 거쳐 피해가정에 경제·법률·의료적 지원을 통하여 폭력 발생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통합솔루션팀 사례회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연계 등 교류·협력 분야와 대내외 교육·홍보 활동이 있다.

기존 수사만 해오던 경찰이 이렇게 예방과 사후관리 분야까지 역할을 하는데 대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과 여건의 한계가 있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업무 과부하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경우, 관리해야 할 재발우려가정이 200가정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가정에 매월 또는 격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상담소 종사자 등 전문가에게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후관리 분야는 경찰-상담소 간 적정업무 분담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상담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중, 발견한 재발사실을 경찰에 인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발제문 관련 토론

앞서 발제문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피해자 신고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관할 경찰서에서 집행지휘에 따라 수시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에도 경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고자 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명령의 취소 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 상 주저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한 임시조치의 경우 더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술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 ‘관할 경찰서 집행지휘에 따라 수시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거나 ‘경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언급한 부분 관련이다. 경찰의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관련 세부지침을 보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이 결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재발우려가정 ‘A’등급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임시조치의 경우 신청단계부터 지정). ‘A’등급으로 지정되면 매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이 때, 법원 결정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규정 등 매뉴얼에 따라 어렵지만 주어진 현실여건에 맞추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법원 결정사실을 알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경찰관서 통보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결정에 대한 불이행 시 경찰 개입은 향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현장의 인력부족 등 한계점과 법원 및 관련기관의 이해도 제고, 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법원 결정사안에 대한 집행여부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집행여부 확인을 경찰에만 의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피해자 보호명령, 보호처분, 임시조치 건수* 대비 경찰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법원의 처분은 갈수록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원 결정 현황 출처 : 대법원 사료연감〉

구분	보호처분	임시조치	보호명령
’14년	5,552건	4,446건	455건
’15년	8,917건	8,164건	1,349건

인력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집행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집행지휘 대상을 가정 보호사건조사관·법원공무원·사법경찰관리·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다양하게 규정한 특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원 및 관련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보호처분 등 불이행과 관련한 현행법 체포에 대한 현장 애로점도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호명령 등 신청이후 당사자 간 화해·변심 등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의 접근에 대한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엄연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처럼 당사자 합의하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신청단계에서부터 경찰·법원·상담소에서의 취소·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와 위반 시 제재수단에 대한 고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가정폭력 사후관리 전담기구 마련 및 경찰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가정폭력 사건 역시 경찰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당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방과 상담, 수사, 사후관리 등 모든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유관기관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거나 원하더라도 상담소·보호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 수사기관 조사 : 유관기관 연계 時 어려운 점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역경찰	피해자 부동의(42.8%)	근처에 상담소· 보호시설 부재(26.9%)	연계를 위한 인력부족(16.4%)
여청수사팀	피해자 부동의(44.9%)	연계를 위한 인력부족(22.8%)	근처에 상담소· 보호시설 부재(21.8%)

아동학대의 경우,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아보전은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며,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27조의 2, 「아동학대특례법」 시행령 제7조)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1366센터, 상담소·보호시설 등으로 연계기관이 흩어져 있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중략)...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러하듯이, 통일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찰(초기대응·사건수사) - 가정폭력 유관기관(피해자 보호·사후관리) 間 상호 전문성을 갖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필요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격리, 접근금지 등 경찰이 취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한 현실적인 벌칙조항의 부재(과태료 부과)로 법 위반자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서 교부한 임시조치 위반 통보서를 행위자가 찢어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위반해도 아무런 신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과태료 규정이 있긴 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실제 부과되기까지 합법적으로 84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즉시성 있는 조치라 보기도 어렵고, 설령, 부과되더라도 이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한)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 징역·벌금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아동학대특례법의 경우에도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징역·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 필요 사항〉

現 「가정폭력특례법」(과태료)	개정 필요案 (징역·벌금)
▶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제65조)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300만원↓(제66조) (단, 검사 미청구 또는 법원 미승인시 제외)	▶ 임시조치 위반 시, 2년↓ 또는 2천만원↓ ※ 「아동학대특례법」에는 既 반영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1년↓ 또는 1천만원↓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검사를 경유하게 되어있는 임시조치 청구절차 간소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임시조치는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으로, 그 내용 또한 엄격한 신체적 제한이 아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일정 범위에 한하여 ‘행위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명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동일하게 사법작용에 따른 검사 경유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속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시조치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퇴거·접근금지 등)의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과 같이, 경찰의 임시조치 또한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검사 경유를 배제하고 있다. 미국 LA, 스페인, 호주, 남아공,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퇴거·격리 등 우리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명령을 발한 후 검사 경유 없이 직접 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고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는 경찰의 행정처분으로 간주, 경찰 판단 하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우리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예방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가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교육위탁 필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 상담이나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교육은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검찰 단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법원 단계의 보호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초기 가해자 상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정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거부 시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임시조치 항목에 상담·교육을 포함시켜 필요시 초기부터 교정프로그램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 신설 시 1~3호(퇴거,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을 둘 것이 아니라 상담·교육 위반 시에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 필요 사항〉

現 「가정폭력특례법」(임시조치)	개정 필요案 (임시조치)
제29조 ① 판사는 (중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퇴거 등 격리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의료위탁 (5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제29조 ① 판사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5호) 동일 <u>6.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의 상담 및 교육 위탁(신설)</u>

IV. 맺으며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20년 동안 법이 20여 차례 이상 바뀌는 등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신고와 검거건수가 증가하고 재범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자살·살인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은밀하고도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거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개선책들이 향후, 수많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로 제도 시행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경찰 역시 법집행 최 일선 기관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토론문

유 향 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http://www.kdcn.or.k>)는 ‘전국적으로 150여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로서, ‘가정폭력 예방과 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며 가정폭력상담소 간의 정보교환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가정폭력상담소들은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수하며,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를 열심을 다해 감당해왔다고 자부한다.

한 예로, 2017년 4월1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제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법적 체계 개선방안 모색’에서 보고된 가정폭력피해자 조사결과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시한 지 20년이 된 이 시기에,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곳으로 ‘가정폭력상담소’가 꼽혔고, 각 지역 수사기관 등에서도 ‘근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부분에서, 지난 20년간의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태조사결과는, 그 간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열악한 조건 중에서도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음에 대한 훌륭한 평가라고 생각되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심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더욱 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인적 지원을 확실히 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던 바였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들은, 현장에서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의 일환으로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감당해 온 기관’으로서, ‘가정폭력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나, 이 시간에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현안들을 참조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에서 의견을 표하기로 한다.

■ ‘상담위탁 처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없음’(p.13)에 관하여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제8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인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의 협의체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의 입장에서, 발표자의 ‘상담위탁 처분의 실효성 없음’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 ‘상담수탁기관 지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

전국적으로 150여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음.

항간에,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 한다’는 논의들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절하’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심리적인 박탈감 및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는 소모적인 의견이라고 봄. 법원의 관심이 있다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상담위탁 집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

상담위탁 집행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상황. 현장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의 헌신적인 노력(프로그램 수행관련 절차, 비용 및 종사자 안전에 대한 문제 등)이 수반되는 상황임.

: e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 ‘8호 처분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만 정해져있고,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 4호 처분과 같이 시간을 명시해줘야 할 것으로 보임 - 6개월 동안 40시간.

cf. 보호처분 결정문이 6개월, 4개월, 2개월 vs 40시간, 24시간, 10시간 등등
법원 및 담당 재판부에 따라 매우 상이함.

: 가정폭력이 범죄이고, 그 범죄자를 교정·치료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형량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없이, 보호처분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 가정폭력상담소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임. 동시에, 각 지역마다 각 상담소의 입장에 맞기는 등의 상황에서, 가해자의 항변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각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의 역할이 됨을 고려하여야 할 내용임.

- ‘피해자 관련.....’에 대하여 :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당연 보호해야 하고, 범죄자는 국가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원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봄.

- ‘상담위탁 예산의 부족’에 대하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비용의 부담)

: 지금 현재, 법원에서 8호 처분을 위해 각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여준 인적·물적 지원은 거의 없다는 점(인천·고양지원 등 제외).

■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대상은, 자발적인 내담자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 상담위탁처분을 받은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8호) 등이 대상이다.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적인 특성과 갈등의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은 타 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이고, ‘그 효과성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이 가정폭력상담소 현장의 입장이다.

이러한 연유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각 기관이 각각의 정체성을 살리는 협업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초동단계에서의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하고, 검찰단계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은, ‘기소하기는 적당치 않으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해자에게,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성행을 교정하는 노력을 한다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로 기소해 주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기관, 예를 들자면, 8호 처분에 따른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해, 가정폭력가해자에 관한 ‘보호처분 형집행기관’이란 인식을 정확히 하고, 가정폭력상담전문기관에 걸 맞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본다.

형사 사법 체계에서 치료명령 제도 - 가정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

이 계 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천참사랑병원 연구원장, 킬리안정서행동 연구소장

인천가정법원 상근진단전문가

보호관찰학회이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들어가는 말

저는 인천 참사랑 병원에서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7호 치료위탁 처분 대상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 소년원인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상담을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소년원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음주 문제 가족력이나 음주이후에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정 폭력으로 겪었을 마음의 상처와 후유증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차 범죄 까지 생각해 보면 가정폭력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속 범죄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해야하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유에 더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투여해야할 이유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2015년 전국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접수는 2011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음주는 가정 폭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재발 예측인자 입니다.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은 가정불화,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음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개 가정 폭력 사건의 30%에서 60%가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지만 아동폭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며 최근 기사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부모 학대로 격리된 심한 아동 학대 경험 아동 가해자의 82%에게 음주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음주 관련 가정 폭력 행위자에게 음주 행위는 가장 분명한 가정폭력 예측 인자입니다. 음주 문제가 결부 되어 있는 가정폭력의 경우에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없이 일반 상담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확한 통계의 수치는 없지만 정신 질환이나 음주 문제가 동반된 경우는 질환의 특성상 재범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치료위탁 처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2014년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 폭력 행위자의 음주 관련성의 빈도와 재범에 미치는 중대성 반해 실제 치료처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이유는 형사사법체계 당사자의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질환 특성과 변화와 치료 회복과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알코올 문제를 부수적인 문제라는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현재 알코올 문제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의료 보험 체계 아래에서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을 담보하고 있는 의료 기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의료제도와 사법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가정폭력 행위자 특성

음주량이 많은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며 음주와 관련된 가정폭력의 경우 역학 구조상 폭력주기의 순환이 거듭될수록 폭력의 수준

(양상과 빈도)은 심하게 발전 되고, 보다 폐쇄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신고가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술만 안마시면 말 수가 적고 순한 양이거나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음주가 그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음주량과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음주 후 조절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가 없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장에 음주를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재판과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 행위를 지속하고 때로는 가정폭력 행위를 반복합니다. 현재 행위자들 중에 알코올 문제를 열심히 치료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력은 없지만 음주 관련 경범죄 위반부터 음주 운전 혹은 주취 폭력 까지 음주와 관련된 다른 다양한 사건 기록을 갖고 있으며 그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된 가정폭력의 문제는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술이 깰 때 경험하는 손떨림, 식은땀 불면 불안 같은 금단 증상이나 우울증 혹은 자살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 집행기능 등의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되며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다양한 신체 질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대개 자신도 문제이지만 배우자나 가족들도 문제가 있다는 양비론을 주장하고 공감 능력과 소통능력이 손상 되어 있어 자신의 음주 문제로 인한 타인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과대 포장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저하 되어 있어 매사에 부정적이며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욕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구성원 또한 공동의존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우울 불안증등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 대상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력이 약화 되어 있거나 붕괴 직전입니다.

치료 위탁 처분과 현실적인 문제

알코올 문제를 동반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수감명령 40시간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 행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 체계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치료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 원칙을 1) 최초 범죄시 치료적 개입의 활성화 2) 충분하고 안정적인 치료 기간의 제공 3) 치료 기간 동안 정기적인 치료 순응도에 대한 감독 4) 적절한 치료 대상자 선정과 즉각적인 치료 배치 5) 전문 치료 인력의 양성 6)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보호 제도 활성화 7) 다기관 협력으로 제안합니다.

물론 가정폭력 사건 이루 치료 처분 명령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약 5개월로 너무 오래 걸리고 치료 처분에 대한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어 치료보호처분을 뭉개고 불이행하여도 실현성이 거의 없는 벌금 오백만원 이외에 별 대책이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치료보호 처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 처분을 통해 적절한 치료대상자 선정이 가능하고 우선 6개월에서 12개월의 안정적인 치료기간이 담보 되며 외래/입원 치료 모두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병과를 통한 보호처분 순응도 감독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의뢰되는 환자들의 치료 참여율은 임상 현장에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환자들의 치료 참여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환자

분들에 비하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의뢰된 행위자들은 성실하게 참여 합니다. 첫 내원 시 향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6개월 동안 주1회 총 24회의 치료 프로그램 내용과 무알코올 치료 참여 원칙을 설명 드리면 대개 매우 힘들고 가혹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500만원 벌금을 내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내원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2016년 3월 인천 가정법원이 개원한 이후 11월에 첫 행위자가 의뢰된 이후 6월 18일 현재까지 30명의 행위자가 의뢰되었는데 비록 치료처분을 받고 치료기관에 첫 방문을 하는 데 까지 평균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치료 위탁 참여자의 90%는 70% 이상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 위탁 기간 6개월은 첫 내원 당일부터라고 환자 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협조적인 대상자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이하지만 치료위탁 처분을 받고도 치료 기관에 방문조차 하지 않거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참석을 빠지고 참여 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래 치료 중에 보호자가 따로 전화를 주어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음주 후 내방 혹은 폭력행위의 재발 경우는 입원으로 처분 변경을 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배려해야 하면서 치료 참여를 유지 시키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치료에 비협조적인 행위자 일수록 재범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정폭력처벌법 상에서는 협조적인 대상자가 비협조적인 분들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협조적인 대상자에게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 이외에 치료 위탁기간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에게 연락해서 구인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원의 처분에 비협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제언

가정법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처분을 통해 가정보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처분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교도소를 자기 발로 찾아 가는 형국입니다. 재판 과정에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들을 치료기관으로 호송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원의 직원이 직접 치료 기관에 데리고 와서 인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협조적인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보호처분 불이행 죄를 만들고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비협조적인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원 체계 정도는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확대가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다양한 수행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치료 팀과 법원 조사관 실무관들과의 실질적이고 격의 없는 소통은 치료 처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입니다. 형사사법제도에서 행위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그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치료비용 대비 5배에서 7배의 범죄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법원 나름의 치료 프로그램 내용과 기간 그리고 치료자의 자격 기준을 세우고 예산을 가지고 외부 위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 하고 치료의 질과 수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반이 확대되고 치료 전문가 육성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건처리 실태 분석과 법제 개선방안

고 경 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1. 시작하면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약칭)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 20년 동안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민간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 및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21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의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왔다. 정부도 2013년 6월 ‘범정부 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경찰·검찰에서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가정폭력사

건 매뉴얼’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폭력을 넘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직도 가정폭력처벌법과 형사사법시스템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과 논의의 시작은 법령과 통계부터’라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발제자께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토대로 발표해주신 가정보호재판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은 귀한 자료로 법의 개정 및 수사·집행기관의 업무개선 등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보충적으로 최근 가정폭력사건 통계를 통해 사건처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약칭함)과 가정폭력처벌법 비교를 통해 피해자 인권이 강화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2. 가정폭력사건 처리 실태 분석

가. 가정폭력사건 처리 실태(검찰)

〈표 1〉 가정폭력사건 처분현황

구분 기간	접수 (구속)	처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송치	기타
			기소계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 (비율)	5,185 (32)	5,240	577	112	465	113	918	8	1,654	22	1,908	40
	100.0 (0.6)	100.0	11.0	(2.1)	(8.9)	2.2	17.5	0.2	(31.6)	0.4	(36.4)	0.8
2015 (비율)	47,007 (662)	46,545	3,970	1,748	2,222	1,245	4,802	63	17,316	11	18,207	931
	100.0 (1.4)	100.0	8.5	(3.8)	(4.8)	2.7	10.3	0.1	(37.2)	0.0	(39.1)	2.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 2〉 가정폭력사건 범죄유형

구분 기간	합계	살인	폭처법 위반	유기	상해	체포 와 감금	공갈	협박	폭행	손괴	주거 침입	기타
2011 (비율)	6,227	21	700	4	1,759	13	-	57	3,202	207	18	246
	(100.0)	0.3	11.2	0.1	28.2	0.2	0.0	0.9	51.4	3.3	0.3	4.0
2015 (비율)	44,819	43	129	14	6,579	142	14	2,805	31,557	2,399	81	1,056
	(100.0)	0.1	0.3	0.0	14.7	0.3	0.0	6.3	70.4	5.4	0.2	2.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최근 가정폭력사건은 2010년 5,185건에서 2015년 47,007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 75%가 비교적 경미한 폭행과 협박 사건이고, 같은 시기 살인과 폭처법위반 등 중대범죄의 비율이 11.5%에서 0.4%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¹⁾, 가정폭력사건이 급증한 주된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가정폭력사범 구속률, 구공판 비율, 가정보호사건 송치비율이 모두 상승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비율과 전체 불기소율이 감소하였다²⁾. 2015년 불기소비율이 50.3%에 이르고 있지만, 합의되면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이 되는 폭행과 협박사건이 전체사건의 76.9%이라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같은 기간 가정 내 살인사건이 21건에서 4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가정폭력사건 관련 형사사법시스템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검찰에서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및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의 가정폭력사건 처분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분 기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사건을 가벼운 폭력사건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하거나 가해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와 경제적 공동체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단순 기소유예 및 구약식 처분을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구공판, 가정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태(법원)

〈표 3〉 2015년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구분	보호처분													불처분	타법원 이송, 기타
	합계	단순처분								병과처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5호	4,5호	5,8호	기타		
16,868	8,917	138	2	-	1,316	1,673	1	79	2,705	86	1,326	530	1,011	7,319	632
(비율)	(52.8)	0.8	0.0	-	8.1	9.9	0.0	0.5	16.0	0.5	7.9	3.1	6.0	(43.4)	3.8

출처: 2016년 사법연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던 폭행, 협박 등 범죄에 대하여도 가해자의 성행교정과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³⁾ 앞서 검찰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전체 가정폭력 사건의 39.1%, 18,207건을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였다.

법원에서는 위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피해자의 안전 및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퇴거 격리나 접근금지처분 뿐 아니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위 2015년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가정보호사건 16,868건 중 7,319건(43.4%)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⁴⁾ 통계상 불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발제자께서 심리절

3)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4)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불처분 결정 사유로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차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당사자 불출석과 특히 피해자의 진술변복이나 인식부족,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등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선에서는 높은 불처분 결정률이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심리 불출석을 더욱 조장하고, 보호처분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당사자 불출석이 불처분 결정으로, 다시 가정폭력이 재발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법원과 검찰에서는 검찰로 반송되는 불처분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및 처리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걱정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원에서도 과태료 부과, 집행인력 보강 등을 통한 동행영장 집행 강화, 필요시 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까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경우도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 당사자에게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정부에서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벌강화,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가정폭력문제 정책방향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8개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하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최근에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가. 법의 목적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

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제2장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중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일반범죄보다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법의 목적에도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가정폭력사건 수사업무 및 처리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처리절차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제 8조)에서는 별도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선고할 정도의 중한 가정폭력사범의 경우 대부분 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 동행출동 의무화 도입

아동학대처벌법(제 10조의 3 등)은 2016. 5.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의 은밀성과 지속 반복되면서 폭력성이 강화되는 특징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자 보호조치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

보호조치제도를 도입으로 가정폭력신고가 활성화하면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직원 등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즉 경찰과 아동학대전문 상담원에게 동행출동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를 꾀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배우자 가정폭력 외에 아동학대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 많지만 신고내용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이 소외되는 수사현실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상담원 등 전문가의 동행출동제도를 도입,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경찰 및 가정폭력상담소의 현실적인 여건과 실질적인 필요성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시조치의 유형 · 절차 · 불이행 제재 개선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 제19조)은 피해자의 안전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임시조치 외에도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등 총 7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특례(제19조 제2항)를 마련하고, 임시조치(제1호~4호) 불이행시 형사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제8조, 제29조)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유형을 4가지에 한정하고 있다. 즉 퇴거 등 격리조치,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또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도 임시조치 신속결정의 특례

(24시간 내)는 인정되지 않고, 임시조치 불이행시 제재(제65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임시조치 유형을 확대하고 결정시한의 특례와 불이행시 형사제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위 임시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로 상담을 받게 되면 적기 개입으로 가해행동의 교정이 가능한 계기가 되고 행위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⁵⁾

마.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거나 진술조력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7조). 특히 아동학대 중상해 등 중대한 사건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현재는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국선변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도입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국가예산 등을 고려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득력 있는 확대 논거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5)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정보호처분의 실효성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2015. 95면 참조

바.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 법제 개선⁶⁾

6호 감호위탁은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에서 분리시키면서 생계유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과 주거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처분이다. 그럼에도 법제의 미비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감호위탁 처분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처벌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2016년 전국 15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을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⁷⁾

일선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보호처분기간이 일부 보호처분을 이행하기에는 너무 짧으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⁸⁾ 특히 직장인이 40~80시간의

6) 발제자 권양희 부장판사는 보호처분 집행의 문제점으로 4호~8호 보호처분은 적절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특히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수강명령의 경우, 직장 등과 병행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다.

감호위탁은 법개정을 통해, 나머지 수강명령 등은 보호관찰과 병과처분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동학대처벌법도 위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로, 보호관찰소는 연간 27만 명의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보호관찰조사명령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0년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육해오고 있지만, 인력 부족(현재 1,325명)으로 법원 등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전담인력의 증원, 직접 상담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고시[법무부고시 제2016-163호, 2016. 5. 16. 제정], 위 시설은 가해자의 거주·관리와 성행교정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므로 향후 가정폭력사건의 감호위탁 목적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6개월 내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상담위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처분기간 상한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1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처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불이행시 제재의 수준을 높여 벌금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목적인 성행교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호처분 이행 실태와 이행율이 낮은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사건과 달리 가정폭력사건은 체계적인 통계관리시스템이 없어 보호처분의 효과성 검증 및 맞춤형 대책 마련이 어려우므로 정책의 세부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검찰과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와 함께 충실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⁹⁾

8) 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법상 8개 보호처분의 유형은 동일하다.

9) 보호처분에 관한 실무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만, 2015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정보호처분의 실효성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학자, 가사조사관, 상담원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가정보호처분제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74.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에 대하여 ‘폭력이 심하지 않고 쌍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과정으로 상담시간을 가짐으로써 가해행동의 교정이 가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상담을 받기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행위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상담원의 사례에서도 부부관계 개선, 폭력행동 인식, 이혼철회 등 긍정적인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55조의 2). 현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선에서는 청구권자를 검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검사가 가정폭력사건 구공판과 동시에 실효되는 임시조치에 갈음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⁰⁾

4. 마치며

2016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이 2013년 29.8%에서 2016년 12.1%로 감소하고, 가족폭력 신고의사는 2013년

10) 예를 들면, 검사가 가정폭력사건 수사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되어 '피해자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 중 위 사건을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한편, 가정보호심판규칙(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고,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검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싶지만, 법상 청구권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임시조치의 실효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라고 절차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

위 임시조치 실효 규정에 대해서는, 위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사건에 부수되는 임시조치 결정과는 그 요건이나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형사적 보호조치라는 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의 전제 사정(재발우려)과 임시조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외의 다른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가 실효되고,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에 큰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일선의 비판이 있다.

55%에서 2016년 61.4%로 상승하는 등 가정 내 여성의 인권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건이 8배나 폭증하고, 가정 내 살인 등 강력사건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피해자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가정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불처분을 낮춰야 한다. 보호처분제도의 형해화는 가정폭력 재발과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법원과 검찰에서는 불처분 원인을 분석하여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이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퇴거 및 접근금지 관련하여 임시조치의 신속결정 특례, 불이행시 제재 강화 등은 꼭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처분 불이행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보호처분 내실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주거권 보장, 가해자의 생계유지와 성행교정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감호위탁처분 활성화’는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강화를 위해 긴요한 정책이므로 우선과제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모두 함께 수사와 재판, 집행 현장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법원, 가정폭력 상담소, 법무부 및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